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성장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일자** 2025년 07월 17일 **소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발표자** 김효봉 변호사



## I. 목적 및 정의

### 목적

- ◎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 ◎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 ◎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정의

- ♥ 디지털자산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 하나이상의 법화(디지털자산인 법화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상환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 ♥ 디지털자산업자
- ✓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 디지털자산중개업

✓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 디지털자산지급·이전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

✓ 디지털자산대여업

✓ 디지털자산자문업

✓ 디지털자산 매매·교환 대행업

## Ⅲ. 디지털자산업의 유형

1 디지털자산 매매 · 교환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디지털자산 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의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디지털자산 보관 · 관리업

♥ 타인의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보관 또는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

4

디지털자산 지급 · 이전업

- ▶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지급 또는 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것1) 지급: 지급인과 수취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하나의 법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
  - ✓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대금의 정산 및 관리
  - ✓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대금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
  - ✓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 ✓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대금 예치 등
  - 2) 이전: <u>하나의 법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제외한 그 밖의 디지털자산</u>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분산원장 주소 또는 계정에서 다른 주소 또는 계정으로 보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Ⅱ. 디지털자산업의 유형

디지털자산 ◎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일임업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6 디지털자산 ②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모은 디지털자산을 이용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다른 디지털자산을 취득・처분, 집합운용업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디지털자산 ◎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대여업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의 가치 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판단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문업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의 거래(매수, 매도 또는 교환 등을 포함한다)를 주선・알선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매매 - 교환 대행업

## Ⅱ. 디지털자산업의 유형

### ◆ 디지털자산업 유형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업종 구분	인가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등록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 신고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자유업종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인가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등록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디지털자산지급·이전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 디지털자산대여업 디지털자산자문업
특징	<ul> <li>인가, 등록, 신고, 지정 등으로 진입규제 수준을 세분화</li> <li>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지정 필요</li> <li>Catch-all 조항 존재</li> </ul>	<ul> <li>크립토 펀드 운용이 가능</li> <li>보관업자의 스테이킹 허용</li> <li>지급 행위와 이전 행위를 분리하되, 하나의 등록단위로 설정</li> </ul>

## Ⅲ. 디지털자산업의 적용배제



### 1 디지털자산업자로 보지 않는 경우

- 자기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는 디지털자산매매 교환업자로 보지 아니함
- **디지털자산매매 교환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디지털자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디지털자산매매 교환업자로 보지 아니함**
- **디지털자산지급 이전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 하는 경우는 **디지털자산 보관 관리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디지털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는 **디지털자산매매 교환업자로 보지 아니함**
- **디지털자산지급 이전업자 외의 디지털자산업자**가 자신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영업에 수반된 디지털자산 이전 행위**를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지급 이전업으로 보지 아니함**

### 2 타법적용배제

- **디지털자산업** 에는 「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 **디지털자산 발행,판매 대가로 금전 / 디지털자산 조달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 IV.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 심의·의결 사항

- 1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 2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 방향** 설정
- 3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구성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

디지털자산 발행자, 디지털자산업자를 비롯한 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 ◆>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 공시 서류
  -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발행자) 또는 불충분한 백서를 법상 요건에 맞게 재작성한 **디지털자산설명서**(디지털자산업자)
  - 이용자에게 실제 판매 또는 취득 권유시 사용할 **판매설명서**
  - 디지털자산의 공시 서류는 **협회가 제출**받아 **형식적 심사** 후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효력 발생**
- 디지털자산을 판매 또는 취득 권유할 수 있는 자
  -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백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한 **발행자** (발행자를 인수하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
  - **외국에서 발행**된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그 백서/디지털자산설명서 및 판매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한 **디지털자산업자**
  -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된 백서 / 디지털자산설명서** 또는 **판매설명서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을 판매 또는 취득 권유하려는 **디지털자산업자** 등
- 디지털자산의 판매 또는 취득 권유 가능시점
  - 백서 또는 디지털자산설명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 다만 **사전판매(pre-sale) 약정은 가능**

### ◆ 발행공시의 예외

- 공시 서류의 협회 제출 면제, **디지털자산의 "핵심정보"**만 이용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방법**으로 전달
- 적용대상:
  - 판매/취득권유 대상인 이용자가 모두 전문이용자인 경우
  - 판매/취득권유 대상인 이용자가 **100명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 당해 판매/취득 권유 개시일부터 **12개월 동안 판매/취득권유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디지털자산 백서 기재항목

- 1) 해당 디지털자산의 발행자(그 임원 및 핵심 인력을 포함한다) 및 운영자(그 임원 및 핵심 인력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 2) 해당 디지털자산의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 3) 해당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 4) 해당 디지털자산의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 5) 해당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 ◆> 백서 • 디지털자산설명서의 심사

- 심사주체: 협회
- **심사기간: 30일** (보완기간 최대 30일 미산입)
- 심사방식: 형식적 심사
  - 백서등이 이 법에서 정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백서등이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백서 또는 디지털자산설명서 중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효력발생: 통합공시시스템 게시(게시주체: 협회) 또는 제출일로부터 30일 경과

### ◆ 백서등의 정정

-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판매설명서를 **사용하여** 판매/취득권유하려는 **발행자**나 **디지털자산업자는 판매설명서의 내용이 최근**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
- 미반영된 경우, 발행자 또는 디지털자산업자는 최근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판매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 백서 · 디지털자산설명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책임주체: 공시서류 작성자 (발행자 또는 디지털자산업자)
- 손해배상책임: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 디지털자산을 취득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 면책사유:
  -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의 경우 **외국 발행자가 기재한 정보에 의존**하였고 판매 또는 취득 권유 시점에 **공개된 다른 정보에** 의하더라도 외국 발행자가 기재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증권신고서	와 백서 심시	의 차이점
-------	---------	-------

	자본시장(증권신고서)	디지털자산시장(백서)
자금조달 단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존재	아이디어 단계, 사업의 실체 없음
심사의 대상	실제 경영현황 및 예상 실적	구체성 없는 미래의 청사진
정보 접근 권한	기업 실사 (주간사)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의 경우 공개된 자료만 이용 가능
진실성 확인	가능	불가능
투자대상자산과의 관계	증권의 가치평가에 직결됨	디지털자산의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없음

### ◆ 기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적용제외	<b>외국 발행</b> 디지털자산 <b>발행주체가 없는</b> 디지털자산	<b>분산원장</b> 의 <b>거래 검증</b> 에 대한 <b>보상</b> 으로서 <b>자동 발행</b> 되는 경우 등
사모인정 여부	불인정	인정  - 판매 또는 매수권유 대상이 <b>모두 전문이용자</b> - <b>이용자가 100명 이내</b> 로서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 당해 판매 또는 취득 권유 개시일부터 <b>12개월 동안</b> 디지털자산 판매 또는 취득 권유의 <b>총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b> 경우
발행공시	<ul><li><b>발행신고서</b>(발행자)</li><li>금융위가 형식적 심사 후 수리</li></ul>	<ul> <li>백서(발행자) 또는 디지털자산설명서(디지털자산업자), 판매설명서</li> <li>협회가 형식적 심사 후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li> <li>공시 서류를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할 의무,</li> </ul>
유통공시	• <b>디지털자산거래소등</b> 의 거래지원 심사 및 상품설명서 공시	<ul> <li>판매설명서를 업데이트하여 협회 제출 및 공시시스템 게시 후 사용</li> <li>디지털자산업자별 개별 영업행위 규제로서 취급하는 코인의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li> </ul>

## VI.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관리

### 적용범위



- **♥ 국내 발행**된 모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화/자산 연동)
- **☞ 해외 발행**된 **원화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 ※ 해외 발행된 외화/자산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내 발행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디지털자산업자의 개별 영업행위 규제에서 취급 가능한 코인의 기준 제한에 대한 별도 근거규정 마련 (단, 보관・관리업은 제외)

#### 적용제외



- - 1)해당 디지털자산이 이 법에 따른 규제와 동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에서 발행되고 2)해당 발행국의 권한있는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경우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발행자가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평균 시가총액이 12개월동안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인가 면제, 다만 발행자로서 그 밖의 의무는 모두 준수

#### 법적성격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VI.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관리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요건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
-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에 보안 기준으로서 **분산원장등에서 중요 기능에 대한 통제 권한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
-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7)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9) 발행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10)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환정책**을 마련할 것
- **11)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12)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VI.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관리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의무

- 백서등 공시의무
-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상환의무
- 준비자산 구성, 유지 의무
  - 가치가 연동된 법화등과 **동일한 법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될 것
  -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발행된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되지 않은 총 잔액 합계와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
  -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행사 관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관리
- 준비자산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공시 및 금융위 제출)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공시 및 금융위 제출)
- 발행 후 상환되지 아니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종 잔액 합계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 충족 의무
- AML 의무(특금법상 디지털자산업자로 보는 간주조항), **대주주 변경신고**를 포함한 지배구조 규제, IT 보안을 포함한 건전경영 규제 등 적용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운영 실패에 대한 조치

- 운영실패 사유:
  - 발행자의 **파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산장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위의 긴급조치 권한:
  - 발행자 또는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발행 또는 거래의 중단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가능
  - 발행자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산법 10조 적기시정조치 준용

## VI.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의무
  - 금융위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할 의무
- ◆ 한국은행의 권한
  - 평상시: 자료제출요구, 금감원에 검사요구
  - 긴급시: **금융위에 의견 표명,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



## VI.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 ◆> 스테이블코인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유형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가치연동 대상	<b>원화</b> 또는 <b>외국 통화</b>	<b>통화</b> 또는 <b>자산</b>
발행인 요건	인가제	인가제
준비자산 규제	인가요건 중,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b>환불 방법</b> 및 <b>환불준</b> 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	<ul> <li>준비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존재</li> <li>가치가 연동된 법화등과 동일한 법화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될 것</li> <li>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미상환 잔액 합계를 상회할 것</li> <li>상환청구권 행사 관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관리</li> <li>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 등</li> </ul>

## VII. 디지털자산업 인가 및 등록

### ◆ 디지털자산업 유형

- ・ 인가대상 (10억원 이상)
  - ☑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 디지털자산중개업

- 등록대상 (5억원 이상)
  - ☑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 디지털자산지급·이전업

☑ 디지털자산일임업

✓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

☑ 디지털자산자문업

☑ 디지털자산매매·교환 대행업

### ◆ 인가 또는 등록 심사기간

- 인가: **총 3개월** (보완기간 90일은 미산입), 기간 도과 후 2주 경과하면 **인가 간주 (→최대 6개월)**
- 등록: **총 2개월** (보완기간 60일은 미산입), 기관 도과 후 2주 경과하면 등록 간주 (→최대 4개월)

## VIII. 영업종료 사업자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관

### 디지털자산업 폐지 공고

- ◎ 폐지 30일전에 홈페이지에 폐지 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 폐지 승인 또는 인가/등록 취소시 거래 종결의무

###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 **⊘ 설립근거** 마련
-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이관의무 규정
-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 위의무미준수시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디지털자산업자로 보는 간주규정 마련

## Ⅸ.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및 재무건전성

### 적용범위

- **☞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
- **◎ 소규모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근거 마련

### 지배구조

- ♥ 대주주 변경승인
- **☞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
- **☞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마련 근거

### 재무건전성

- **☞** 별도 위험 지표가 없으므로 **순자본**, **총위험액**의 근거만 마련
- ◎ 금융위 고시로 디지털자산업에 적합한 건전성 지표 개발 필요
- ◎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의무, 회계처리 기준
- **◎ 업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근거 마련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신용공여에 한정)

## X.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 디지털자산 비대면거래를 하지 않거나
-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 분산원장등의 개발 및 관리

• 디지털자산을 발행 • 관리하는 분산원장 및 이에 부수한 자동화된 조건 이행 장치(이하 "분산원장등")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분산원장등의** 보안상 취약점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면밀히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충분히 보완하기 전에는 이용자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 전자적 침해행위의 금지 등

•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자산을 발행 관리하는 분산원장등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용자 자산을 탈취하거나 디지털자산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 디지털자산업자의 책임

- 면책사유: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
  -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디지털자산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신의성실의무
- 정보제공의무: 업 유형, 서비스명,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재무 및 경영현황, 수수료 등
- 상호규제
- 겸영업무, 부수업무, 업무위탁 근거 마련
- 설명의무 및 광고 규제
- 광고 검토 및 약관 심사는 협회가 수행
- ※ **적합성 원칙은 개별 영업행위**로 포함 (디지털자산일임, 자문, 집합운용업자에 한정)

### 예치금 보호

- 예치 디지털자산 보호: 파산절연 규정 추가
- "분리하여 보관된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제1항에 기재된 이용자 명부에 따른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제6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명부의 내용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함"

### 디지털자산매매 • 교환업자 및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거래지원 심사 기준 중 일부를 법에 명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고시 위임
  -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이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원 불가
  -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과거 사업 이력, 디지털자산 운영의 투명성, 디지털자산 분배의 집중도, 디지털자산의 실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자산 거래지원기준(이하 "거래지원기준"이라 한다)을 마련
  -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 해외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일부 요건 적용 배제
- 거래지원 심사 절차 중 일부는 법에 명시
  - 거래지원심의 · 의결기구를 설치할 것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심의·의결기구의 **위원을 선임**할 것
  - 거래지원 **개시 유지 종료 결정**은 거래지원심의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를 것**
  - 거래지원심의 · 의결기구의 **독립성, 공정성 및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신용공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금지
- 이상거래상시감시의무는 디지털자산매매 교환업자 및 디지털자산중개업자가 수행

### ◆>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 종료 관련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거래지원 심사기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협회)	개별 거래소
거래지원심사	개별 거래소(자체 심사 후 위원회 보고) 또는 <b>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협회)</b>	개별 거래소
거래지원 유지심사	개별 거래소(자체 심사 후 위원회 보고)	개별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심사	<b>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협회)</b> - 개별 거래소 신청 또는 직권	개별 거래소
사후통제	<b>금융위</b> 검사	<b>금감원</b> 검사

### 디지털자산보관 • 관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자는 보관 관리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으로 적극적인 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분산원장에서 검증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행위 등 소극적인 운용행위(스테이킹 등)는 가능**

### 디지털자산지급의 영업행위 규칙

- 디지털자산지급업자는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 금지** 
  - 1) 적격해외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행되었을 것
  - 2) 발행된 외국의 권한있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 경우 발행자가 발행한 외국의 권한있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 등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자가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모을 수 있는 집합운용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한함
-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자는 집합운용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디지털자산**의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 X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근거 마련
  -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자가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모을 수 있는 집합운용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한함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수요 ·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시장을 개설 · 운영하는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위탁한 매매거래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되, 1년 규정 삭제
- 시장질서교란행위 추가

## X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위반유형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이상거래 상시감시	디지털자산 시장감시위원회(협회)	개별 거래소
유동성 공급	안정조작(투자매매업자) 시장조성(투자매매업자)	시장조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감사합니다

**일자** 2025년 07월 17일 **소속**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성명** 김효봉 변호사

